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9. 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8월 8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년 8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4. 9. 8)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새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719호(94. 1. 7) 및 동법시행령 제14284호(94. 6. 17), 동법시행규칙 제12호(94. 6. 17)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법령(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8조)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조례 12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대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칙의 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미성년자 보호조항 삭제로 인한 폐지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년월일 : '94. 8.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사 유

○새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719호(94. 1. 7) 및 동법시행령 제14284호(94. 6. 17), 동법시행규칙 제12호(94. 6. 17)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법령(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8조)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 요 골 자

○조례12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관 련 법 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

4.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